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주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51

발의연월일: 2021. 1. 28.

발 의 자:전주혜·이 용·정진석

한무경 · 엄태영 · 조수진

김정재・황보승희・서범수

김태호 • 박수영 • 서정숙

박형수 · 최춘식 · 태영호

서일준 · 하영제 · 이 영

강대식 · 추경호 · 성일종

송언석 · 김태흠 · 김예지

윤두현 · 정운천 · 이주환

최연숙 · 최승재 · 김용판

권명호 · 서병수 · 윤한홍

김석기 · 윤창현 · 박 진

이만희 • 김은혜 • 정동만

허은아 • 권영세 • 김기현

정경희 · 지성호 · 박대수

류성걸 • 이종성 • 조태용

김영식 · 임이자 · 신원식

유의동 • 이철규 • 이양수

김선교 · 김미애 · 김형동

배현진 · 조명희 · 배준영

김성원 • 박성중 의원

(6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 등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실시,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,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·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,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.

그런데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건의 발생사실이나 처리결과 등에 대한 조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, 사건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가기관의 장 등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,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, 제출받은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,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4 등).

법률 제 호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789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의4(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)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,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건처리 결과와 개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8조제1항 중 "제3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.

1.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 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

보하지 아니하거나,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

2. 제3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 _____ 개 정 안

법률 제1789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

제5조의4(성폭력 사건 발생 시조치)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,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나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점검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

법률 제1789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

제5조의4(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)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 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 하고,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건처리 결과 와 재발방지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

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 이 현장조사를 거<u>부하는 등 업</u> 는-----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·③ (생 략)

제38조(과태료) ① 제31조의2제5 제3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

- 1.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 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하거나,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하 지 아니한 자
- 2. 제3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